< 일 러 두 기 >

○ 법령명 : 식품 원료 Echinacea angustifolia 뿌리의 표시 규정
○ 제정일 : 2011년 4월 19일
○ 최종개정일 : 2019년 10월 18일
○ 출처 :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(방문일 : 2022년 1월 25일)

식품 원료 Echinacea angustifolia 뿌리의 표시 규정

1. 본 규정은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0관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Echinacea angustifolia 뿌리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는 「2세 이하 유아, 당뇨병 환자, 면역 질환자 혹은 면역 약물 복용자는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.」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.